

## 8. 미국(United States)

#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분	2017	2019	비고
보험료율	가입자 6.2% 자영자 12.4% 사용자 6.2%	가입자 6.2% 자영자 12.4% 사용자 6.2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\$127,200 / 없음	\$132,900 / 없음	\$5,700 ↑
연금수급 개시 연령	66세	66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40분기	40분기	-

#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 및 현행법** : 1935년(사회보장), 1972년(사회부조, 1974년 시행)

### 2 제도형태

- **사회보험 및 사회부조**

### 3 적용대상

- **당연적용** : 연간 순소득이 최소 \$400 이상인 근로자 및 자영자, 연간 총소득이 최소 \$2,100 이상인 가사 근로자, 1984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연방정부 근로자 및 주정부·지방정부 근로자 다수
- **적용제외** : 특정 종교단체 구성원, 미국에 임시체류하고 있는 비거주 노동자, 미국 내의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비거주 직원, 그리고 그들이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특정 학생
- **특별제도** : 철도 근로자, 1984년 1월 1일 이전 고용된 연방정부 근로자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근로자

※ **사회부조** : 50개주, 콜롬비아 특별구, 북마리아나제도 중의 한 곳에 거주하며, 완전한 1개월 또는 연속 30일 이상 미국에 부재하지 않는 빈곤한 미국 시민과 국적자,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시민권자

- 가입자 : 적용소득의 6.2%
    - 보험료 부과를 위한 상한 소득 : 연 \$132,900
  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소득은 전국 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연간 조정
    - 보험료 부과를 위한 하한 소득 : 없음
  
  - 자영자 : 적용소득의 12.4%
    - 보험료 부과를 위한 상한 소득 : 연 \$132,900
  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소득은 전국 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연간 조정
    - 보험료 부과를 위한 하한 소득 : 없음
  
  - 사용자 : 적용임금의 6.2%
    - 보험료 부과를 위한 상한 소득 : 연 \$132,900
  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소득은 전국 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연간 조정
    - 보험료 부과를 위한 하한 소득 : 없음
  
  - 정부
    -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목적세 수입(고소득 사회보장수급권자가 납부)의 일정 부분을 신탁 기금에 배분
    - 특별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정부 고용 근로자를 위한 사용자로서의 납부
- ※ 정부는 사회부조의 총 비용을 부담(가입자, 자영자, 사용자의 부담은 없음)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66세(2027년까지 67세로 상향) 도달, 40분기 이상의 가입기간 필요
  - 가입기간(분기)은 가입자의 연소득에 기초
    - 한 분기의 가입은 가입자의 연 소득에 기초하며 가입기간 인정을 위한 하한 소득은 2019년 \$1,360(전국 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연간 조정)
  - 조기연금 : 62세, 40분기 이상 가입기간 필요
  - 자산조사
    - 가입자가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연도 전까지 연간 소득이 \$17,640을 초과하는 \$2마다 \$1씩 감액,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해에는 \$46,920을 초과하는 \$3마다 \$1씩 감액,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생일이 속한 월부터는 자산조사 미 실시
    - 자산조사는 퇴직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피부양자에게도 적용
  - 연기연금 : 70세까지 연기 가능

- 배우자급여(이성 및 동성 배우자)
  - 가입자와 최소 1년 이상 혼인상태를 유지한 62세 이상의 배우자(1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음, 자녀가 장애급여를 수급한다면 자녀 연령제한 없음)
  - 일반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가입자와 최소 10년 이상의 혼인 유지기간이 있어야 하며, 현재는 미혼이어야 함
  - 배우자 및 이혼배우자가 그 자신의 소득 기록(가입기간)에 따라 더 많은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거나 수급권이 있는 경우, 배우자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
- 자녀급여
  -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지급(정규 학생인 경우 19세, 22세 전 장애를 입은 경우 연령 제한 없음)
  - 의붓자식에 대한 급여는 이혼 시 종료
- 연금은 미국 시민에게 해외 지급되며, 상호협정 또는 특별한 조건 하에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함. 다만, 1984년 이후 최초로 수급 가능하게 된 외국인 피부양자는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, 일반적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

#### ○ 노령보충소득급여(사회부조, 자산조사)

- 65세 도달
- 자산조사 : 근로 및 불로소득(기타 다른 급여 포함) 그리고 자산(현금, 투자, 토지 및 재산 포함)이 특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
- 해외 지급되지 않으며, 수급자가 미국을 30일 이상 떠나있으면 지급 중단됨

#### ○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육체적·정신적 장애로 실질적인 소득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야 하며, 최근 근로 및 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
  - 월 소득 \$ 1,220 또는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\$2,040까지는 실질적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정됨
  - 최근 근로요건 : 장애가 ① 24세 이전에 발생하였다면, 가입자는 장애 시작 직전 3년의 기간 중 최소 1.5년(6분기)의 가입기간 필요 ② 24세~30세에 발생하는 경우, 21세부터 장애발생 분기까지 매년 6개월(2분기) 이상 가입기간 필요 ④ 31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, 장애 발생 직전 10년 중 5년(20분기) 이상 가입기간 필요
  - 한 분기의 가입은 가입자의 연 소득에 기초하며 가입기간 인정을 위한 하한 소득은 2019년 \$ 1,360(전국 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연간 조정)
  - 근로기간 요건 : 62세 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최소 1.5년(6분기)의 가입기간에 대상자의 연령에서 21을 뺀 숫자 이상의 총 가입기간(분기) 필요. 62세 이상인 경우 40분기 이상의 가입기간 필요
- 젊고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급 요건이 덜 엄격함
- 월 소득이 실질적인 이익을 위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근로 가능
- 배우자급여(이성 및 동성 배우자)
  - 가입자와 최소 1년 이상 혼인상태를 유지한 62세 이상의 배우자(16세 미만 자녀를 양육

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음, 자녀가 장애급여를 수급한다면 자녀 연령제한 없음)

- 일반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가입자와 최소 10년 이상 혼인 상태를 유지했어야 하며, 현재는 미혼상태이어야 함
- 배우자 및 이혼 배우자가 그 자신의 소득 기록(가입기간)에 따라 더 많은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거나 수급권이 있는 경우, 배우자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
- 자녀급여
  -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지급(정규 학생인 경우 19세, 22세 전 장애를 입은 경우 연령 제한 없음)
  - 의붓자식에 대한 급여는 이혼 시 종료
- 연금은 미국 시민에게 해외 지급되며, 상호협정 또는 특별한 조건하에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함. 다만, 1984년 이후 최초로 수급 가능하게 된 외국인 피부양자는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, 일반적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
- 장애연금은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정지되고,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
#### ○ 장애보충소득급여(사회부조, 자산조사)

- 65세 미만의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에게 지급
- 자산조사 : 근로 및 불로소득(기타 다른 급여 포함) 그리고 자산(현금, 투자, 토지 및 재산 포함)이 특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. 장애 관련 근로에 대한 일정비용은 소득에서 공제
- 해외 지급되지 않으며, 수급자가 미국을 30일 이상 떠나있으면 지급 중단됨

#### ○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이나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
  - 사망 당시 62세 미만이면 사망자가 적어도 6분기 이상 가입기간이 있고 총 가입기간이 사망자 나이에서 21을 뺀 것과 같아야 함
  - 한 분기의 가입은 가입자의 연 소득에 기초하며 가입기간 인정을 위한 하한 소득은 2019년 \$1,360(전국 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연간 조정)
  - 사망자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사망 전 13분기 중 최소 6분기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자녀와 피부양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에게만 지급
- 수급권자 : ① 사망 전 최소 9개월 이상 가입자와 혼인이력 있는 배우자(동성 또는 이성) ② 이혼 배우자는 60세 전에 적어도 10년 이상 혼인기간이 있고 재혼하지 않아야 함 ③ 16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나이 제한 요건 없음 ④ 장애가 있는 배우자 또는 50세 이상 장애가 있는 이혼 유족 배우자로 장애가 가입자의 사망 전에 또는 사망 후 7년 이내 발생한 경우 ⑤ 18세 미만 미혼 자녀(정규 학생인 경우 19세, 22세 전 장애를 입은 경우 연령 제한 없음) ⑥ 가입자의 사망 이후, 재혼하지 않은 62세 이상 피부양 편친(偏親)으로 사망 당시 사망자에게 적어도 50% 이상 피부양 상태였어야 함
- 자산조사 : 유족의 연령이 퇴직연령 이하인 경우, 연간 소득 \$17,640(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) 또는 \$46,920(퇴직연령에 도달하는 해) 초과 시 급여는 감액되어 지급되며, 퇴직연령부터는 자산조사 미 실시

- 연금은 미국 시민에게 해외 지급되며, 상호협정 또는 특별한 조건 하에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함. 다만, 1984년 이후 최초로 수급 가능하게 된 외국인 피부양자는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, 일반적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

### ○ 사망급여(사회보험)

- 사망자가 사망 전 13분기 중 최소 6분기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거나 최소 6분기 이상의 가입기간에 총 가입기간이 사망자 나이에서 21을 뺀 것과 최소 같은 경우 지급
- 수급권자 : 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, 가입자와 함께 살고 있던 유족 배우자(동성 또는 이성)에게 지급 ② 떨어져 살았더라도 유족 배우자가 가입자의 가입이력에 따라 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수급가능 했다면 수급권 인정 ③ 수급가능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, 유족자녀가 가입자의 가입이력에 따라 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수급가능 했다면 수급권 인정
- 사망급여는 대부분의 국가로 해외 지급 가능

## 6

###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# ○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연금은 가입자의 평생 소득 중 가장 높았던 35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며, 60세 이전의 소득은 평균임금의 증가 수준에 따라 조정
- 월 최대 연금액 : \$2,861
- 조기연금 : 정상 퇴직연령 전에 청구 시, 1개월 마다 연금 감액
- 자산조사 : 가입자가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연도 전까지 연간 소득이 \$17,640을 초과하는 \$2마다 \$1씩 감액,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해에는 \$46,920을 초과하는 \$3마다 \$1씩 감액,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생일이 속한 월부터는 자산조사 미 실시
- 연기연금 : 70세가 될 때까지 연기하는 1개월 마다 0.67% 증가
- 배우자급여
  - 퇴직연령에 도달한 배우자(이혼한 배우자 포함), 청구 시 퇴직연령 전이지만 수급 가능한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의 50% 지급
  - 정상 퇴직연령 전에 급여 청구 시 감액 적용
- 자녀급여 : 수급가능한 각 자녀에게 노령연금의 50%까지 지급
- 가족에게 지급되는 노령급여의 최대 합산 금액은 가입자 노령연금의 100~180%이며 이혼한 배우자의 급여는 합산 급여 총액에 산입하지 않음
- 급여조정 :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### ○ 노령보충소득급여(사회부조, 자산조사)

- 개인에게는 월 \$771, 부부에게는 월 \$1,157까지 지급
- 관할 주 정부는 급여액을 보충할 수 있음
- 급여액 조정 :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### ○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연금액은 21세부터 장애가 발생한 분기까지의 가입자 평균 소득(소득은 평균임금의 상승에 따라 조정)에 의해 결정되며, 소득이 가장 적었던 5년은 산정에서 제외
- 1981년 이후에 장애가 시작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저연금액이 적용되지 않음
- 배우자급여
  - 퇴직연령에 도달한 배우자(이혼한 배우자 포함), 청구 시 퇴직연령 전이지만 수급가능한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의 50% 지급
  - 정상 퇴직연령 전에 급여 청구 시 감액 적용
- 자녀급여 : 수급가능한 각 자녀에게 노령연금의 50%까지 지급
- 가족에게 지급되는 장애급여의 최대 합산 금액은 가입자 장애연금의 100~150%이며 이혼한 배우자의 급여는 합산 급여 총액에 산입하지 않음
- 급여조정 :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### ○ 장애보충소득급여(사회부조, 자산조사)

- 개인에게는 월 \$771, 부부에게는 월 \$1,157까지 지급
- 관할 주 정부는 급여액을 보충할 수 있음
- 급여액 조정 :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### ○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
  - 사망자가 수급하거나 수급권이 있던 노령.장애연금의 100%를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한 유족 배우자나 이혼배우자에게 지급
  - 수급가능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유족 배우자 또는 이혼배우자에게 사망자 연금의 75% 지급
  - 60세~정상 퇴직연령(66세) 사이의 유족 배우자 또는 이혼배우자에게는 사망자 연금의 71.5~99%를 지급
  - 50~59세로 장애가 있는 유족 배우자에게는 71.5% 지급
  - 자산조사 : 가입자가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연도 전까지 연간 소득이 \$17,640을 초과하는 \$2마다 \$1씩 감액,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해에는 \$46,920을 초과하는 \$3마다 \$1씩 감액,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생일이 속한 월부터는 자산조사 미 실시
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, 장애연금의 75%를 수급가능한 각각의 자녀에게 지급
- 피부양 부모연금 :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, 장애연금의 82.5%를 수급자격이 있는 편친에게 지급하며, 수급 자격이 있는 부모가 2명인 경우 각각 사망자 연금의 75%를 지급
-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최대 합산 금액은 가입자 노령연금의 100~180%(장애 연금은 100~150%)이며 이혼한 배우자의 급여는 합산 급여 총액에 산입하지 않음
- 급여조정 :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### ○ 사망급여(사회보험) : 일시금으로 \$225지급, 수급가능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

○ **사회보장청(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)**

- <https://www.ssa.gov>
- 정부 행정부 내 독립기관
- 지역 프로그램센터, 구청, 지역사무소를 통해 제도 운영

○ **재무부(Treasury Department)**

- <https://www.treasury.gov>
- 국세청을 통한 사회보장세의 징수 관리 감독
- 급여 지급 감독 및 기금 관리

<2019년 ISSA 자료>